

2021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(2차)

2021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(시험일정 일부 변경)하여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17일

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변경사유 및 근거

- 변경사유 :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인력난 해소 및 신속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, 감염병 대응인력 직류(간호8급, 보건진료8급, 보건9급)의 임용시험 일정 변경
- 관련근거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2조의 2(시험의 연기·변경) 제1항

제62조의2(시험의 연기·변경)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·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2. 임용시험 일정 변경사항

구분	대상 직류	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		시 험 구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		접수기간	취소기간				
제1회 임용 시험	간호8급, 보건진료8급, 보건9급	3.29.(월) ~ 4.2.(금)	4.5.(월) ~ 4.7.(수)	필 기	5.20.(목)	6.5.(토)	6.28.(월)
				면 접	6.28.(월)	7.12.(월)	7.20.(화)
	그 외 직류 * 변경 없음	3.29.(월) ~ 4.2.(금)	4.5.(월) ~ 4.7.(수)	필 기	5.20.(목)	6.5.(토)	7. 8.(목)
				면 접	7. 8.(목)	7.26.(월)~ 8.4.(수)	8.20.(금)

- 3개 직류(간호8급, 보건진료8급, 보건9급)에 한해 시험일정이 위와 같이 변경되며, 그 외 직류의 시험일정은 변경 없이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습니다.

3. 시험일정 변경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일 변경

○ 3개 직류(간호8급, 보건진료8급, 보건9급)에 한해, 변경되는 응시자격 적용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
※ 적용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2021.7.12.)

나. 학력·자격(면허)증 제한 등 * 보건9급은 해당 없음

직 급	직 렬	직 류	해당 학력·자격(면허)증
8급	간 호	간 호	조산사, 간호사
	보건진료	보건진료	조산사, 간호사

※ 적용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2021.7.12.) 기준 유효하여야 함

다. 다만, 변경되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2021.7.12.)이 응시자에게 불리한 경우, 당초 공고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2021.8.4.)로 응시자격 기준일을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응시자의 최종합격 여부는 별도의 날짜에 결정·공고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사항

○ 위 변경 공고 이외의 내용은 『2021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』(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-14호, 2021. 2. 10.) 및 『2021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』(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-53호, 2021. 5. 28.)와 동일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(033-249-2227, 2218, 25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r>)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.